

패전국 일본이 본 우리의 광복: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처리

최운도*

1. 서론
2. 광복 전후 일본의 대조선 인식
3. 전후처리 1: 광복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4. 전후처리 2: 한일협정
5. 결론

1. 서론

2011년 8월 30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일본군 위안부의 배상분쟁 해결 부작위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판결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012년에는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때에 있었던 강제 동원 자체가 불법이고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 청구권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즉, 강제징용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어느 것도 제대로 된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해다. 위의 문제들은 모두 일제 강점기에 발생하였다. 일제의 지배로부터 해방이 되고 70년이 지났음에도 우리는 일본이 36년간 우리에게 입힌 피해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는 강점기 동안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그 문제들이 청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광복을 가져다 준 일본의 패전과 연합군의 승리에 따른 전후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광복이 되었으나 대한민국은 나중에 건국되었고, 2차대전의 뒷정리는 6.25전쟁이 일어나고 나서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식민지배의 가해자였던 일본과 그 피해자였던 대한민국 사이의 뒷정리는 광복 이후 20년이 지난 1965년에야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두 조약은 광복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까지 한일관계가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여기에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한일협정에 관한 연구들이 지적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하였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70년 전 우리의 광복이 식민통치국이었던 일본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는지, 패전국으로서의 일본은 어떠한 시각과 입장에서 우리의 광복을 인식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 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시각이 광복 70년이 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광복을 전후한 시기, 일본인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볼 것이다.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이 어떠한 인식 속에서

전후처리를 준비했는지 알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와 해방에 대한 인식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본다. 이는 전후체제라는 틀 속에서의 우리 광복의 의미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는 일본의 인식이 전후체제를 거쳐 어떠한 모습으로 한일협정에 투영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근대초기부터 형성되었던 일본의 한국에 대한 비하와 경멸 의식은 식민지 지배를 거치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무시한 동화정책 속에서 확대 재생산되었다. 사회적으로는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면서 전시동원령에 있어서는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이중적인 인식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은 패전직후의 어지러웠던 시기에는 철저한 무관심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재일 한국인 문제와 전후처리에 있어서는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시민도 아니고 연합국 시민도 아닌 식민지 국민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과정뿐 아니라 패전 후 20년 뒤에야 마무리 된 한일협정의 체결과정에서도 지속되어 조약체제 속에 반영되었다. 오늘날 양국의 외교적인 관계를 현재의 국력을 반영하다고 하더라도 과거사 문제와 피해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러한 인식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광복 전후 일본의 대조선 인식

가. 식민지 시기 일본의 대조선 인식

근대시기 일본의 조선인에 대한 인식은 경시와 멸시로 축약될 수

있다.¹⁾ 이러한 인식이 형성된 직접적 계기는 식민지 지배로서 침략과 통치의 과정 속에서 정착된 것이다. 당시 대조선 인식은 주로 조선에 건너와 생활하던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10년의 강제병합이 실행에 옮겨지기 이전 준비단계에서 한반도와 동북지역을 조사한 지리학자 야즈 쇼에이(矢津昌永)는 그의 저서 『조선서백리기행(朝鮮西伯利紀行)』(1894)에서 조선인을 야만적이며 불결하며 게으르고 비진보적이라고 묘사하였다. 조선인에 대해 위생관념이 없고 불결하며 나태하다는 인식은 당시의 많은 기행문들이나 기록물들이 갖는 공통된 조선관이라 할 수 있다.²⁾ 최혜주(2008)는 야즈 쇼에이의 시각에 대해 같은 아시아 내에서 야만과 문명을 구분한 ‘일본형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평가한다.³⁾

오리엔탈리즘이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기 위해 그 문화를 재구성하고 서양 우위의 권위에서 동양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그렇다면 야즈 쇼에이가 본 조선의 모습은 식민지 대상으로서의 조선을 가정한 상황에서 받아들인 조선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기행문에서 조선을 인구밀도나 기후, 토양, 지하자원 등에서 최적의 식민 대상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일본의 근대 조선관에는 식민지 지배기 동안 또 하나의 이미지가 덧씌워지게 된다. 바로 3.1운동의 영향이다. 일본인

-
- 1) 윤건차, 「일본의 동아시아 인식: 대동아공영권에서 이시하라 발언까지」, 『역사비평』 53호, 37~53쪽.
 - 2) 金學俊, 『西洋人の見た朝鮮: 李朝末期の政治・社會・風俗』 金容權 譯, 山川出版社, 2014. 19세기 후반 일본의 지식인들은 조선에 대해 ‘반개화 국가’ 혹은 ‘야만국가’로 보고, 서양이 자신에게 했듯이 일본도 조선을 개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143쪽.
 - 3) 최혜주, 「특집 : 여행기를 통해 본 한·일 양국의 표상; 『조선서백리기행(朝鮮西伯利紀行)』(1894)에 보이는 야즈 쇼에이(矢津昌永)의 조선 인식」, 『동아시아문화연구』 44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08, 57~93쪽. 야즈 쇼에이(矢津昌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반도의 모습을 토끼모양으로 비유한 주장의 장본인임.

들은 자신들의 지배에 저항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반대운동에 나선 열기에 놀랐으며, 그 조선인들이 가진 자신들에 대한 증오를 보면서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였다.⁴⁾ 조선인들의 크고 작은 저항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고 그러한 인상은 더욱 강화되어 갔다. 2차대전이 끝난 후에는 재일한국인들의 폭력적 일탈행위들로 이어지면서 일본인들 사이에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고착되어 갔다. 지배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항운동만큼 골치 아프고 무서운 것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근대시기 일본인들은 조선에 대해 ‘불결’, ‘나태’, ‘위험’이라는 인식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에 대한 인식은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아이덴티티 패러독스⁵⁾로 자리잡게 되었다. 구제국주의 열강들이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현지인들에게 느끼는 차별의식이나 구별의식과는 다른 의식이었기 때문이다. 인종적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유사한 민족에 대한 차별의식은 심리적 인식의 차원에서는 불일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식민지 지배의 정책들도 바로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만들어지게 된다.

한반도에서의 조선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일본으로 건너가 식민지 통치 시기를 거치면서 조선인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1910년 강제병합 이후 토지조사사업 등으로 많은 이들이 땅을 잃고 만주나 일본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환경에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식민지인이라는 이유로 임금도 일본인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였으며, 직업은 막노동(‘노가다’), 함바집노동, 항만노동

4) 木村幹, 『『不潔』と『恐れ』文學者に見る日本人の韓国イメージ』岡本幸治 編 『近代日本のアジア観』ミネルヴァ書房 1998, 8~11쪽.

5) 이승희, 「식민지 시기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 치안당국의 인식」, 『한일관계사연구』 44집, 한일관계사학회, 2013. 4, 161~191쪽.

및 고철회수와 같은 힘든 육체노동에 국한되었다. 그 결과 조선인-중국인-피차별부락민-일본인 이라는 민족적 서열과 차별이 작용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었다.

나. 일본의 식민지 통치정책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의 목적은 일본의 제국주의 경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수탈에 있었으나, 그 운영의 기본방침은 ‘동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강덕상(姜德相)은 일본의 수탈 정책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910년도에는 땅 내놔, 20년대에는 쌀 내놔, 30년대 후반부터 45년까지는 사람 내놔, 목숨내놔.”⁶⁾ 이들 세 시기는 각각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통치의 시기와 일치한다. 수탈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총칼을 동원한 억압과 강탈이 진행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선인들뿐 아니라 일본사람들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해 왔다.⁷⁾

3.1운동 직후인 8월 19일 소화 천황의 조서(詔書)가 나왔다. “짐은 일찍이 조선의 강령을 생각하고, 그 민중을 애무(愛撫)하기를 일시동인(一視同仁), 짐의 신민으로서 추호도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각자는 생애 힘써서 골고루 휴명(休明)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한다”고 하였다. 그 다음날에는 하라 다카시(原敬) 수상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조선은 일본의 판도로서 속방이 아니고, 식민지도 아니며, 바로 일본의 연장”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2대 조선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도 ‘조선은 바로 제국의 판도로서 그 속방이 아니고, 조선인은 바로 제국신민으로서 내지인과 하등 차별이

6) 姜德相, 『朝鮮人學徒出陣』 岩波書店, 1997, v쪽.

7) 水野邦彦, 「敗戦後日本社會の形成:朝鮮と向き合わない日本」, 『季刊北海學園大學經濟論集』, 2014, 95~108쪽.

있지 않으며... 조선의 통치 또한 동화의 방침에 기초하여 일시동인의 대의에 따라...'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왜 이렇게도 '동화'를 강조한 것일까? 기본적으로는 조선인으로서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조선을 일본에 완전히 흡수함으로써, 조선의 존재를 없애므로써 조선과 일본의 대립이 없도록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의 일부분으로 흡수함으로써 조선인들로 하여금 조선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도 없고, 상하 관계도 없이 하나의 일본이 되는 것이라는 명분을 걸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이었는지 실패에 가까웠는지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문제는 이 정책이 조선에 대한 것뿐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하타타 다카시(旗田巍)는 그 동화 정책의 결과가 "지배자 의식을 결여한 지배, 식민지 의식을 결여한 식민지 경영"이었다고 주장한다.⁸⁾ 그러나 그 지배 의식의 결여가 낳은 결과는 일본인이 조선인들의 삶의 터전인 조선의 땅을 빼앗고도, 그 땅이 일본이라고 인식하도록 된 것이다. 동화정책은 처음부터 조선인을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지 않은 데는 출발하였으며, 조선인에 대한 멸시와 경시의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동화정책의 결과는 책임감과 죄악감의 결핍과 함께, 열등한 존재를 일본인의 지위로 승격시켜주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멸시와 경시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더 큰 차별과 멸시로 끝나는 동화정책의 논리는 무엇일까? 무단통치기로부터 시작되는 조선통치정책의 기본적 사고는 '조선정체사관'과 '일선동조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 둘이 바로 동화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언설로

8) 旗田巍, 『日本人の朝鮮觀』 勁草書房 1969. 한국어판 이기동 역, 『日本人의 韓國觀』 일조각, 1983. 6쪽.

이용되었다. ‘동화’란 한편으로는 일본과 조선의 인종적, 지리적, 역사적 ‘가까움’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과 조선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차이란 조선정체사관이 주장하듯이 주로 ‘문명의 정도’에 관한 것이다. 일본은 유교의 정신에다 서양신문물의 의복을 착용한데 대해, 조선은 빈들거리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여 일하기를 게을리 하고 근검저축의 정신이 부족하고, 위생정신이 뒤떨어짐을 강조한다. ‘가까움’에 대해서는 일선동조론을 말하는 것으로, 원래 동일인종일 뿐 아니라 고대에는 한 나라였기 때문에 일한병합은 침략이 아니라 고대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다.⁹⁾

그러므로 동화라는 것은 다시 말해 원래 한 뿌리에서 나온 두 나라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동안 문명적으로 뒤떨어져 있던 조선인들을 문명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조선은 탈아입구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멀리해야 할 ‘악우(惡友)’가 되었다가 동화정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 조상(同祖)을 둔 지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다. 광복에 대한 일본의 인식

8월 14일 일본정부는 포츠담 선언의 수락을 연합국들에게 통보하고 15일 천황이 방송을 통해 항복선언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공표되었다. 갑자기 찾아온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 우리의 광복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희박했다. 한반도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무사 귀환과 행정기구의 이양을 위한 조선총독부의 대책 등이 전부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¹⁰⁾ 패전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에

9) 小熊英二, 「同化言説の完成」, 『<日本人>の境界: 沖縄・アイヌ・台湾・朝鮮植民地支配から復歸運動まで』, 新曜社, 1998, p.161-66.

10) 李圭泰, 「植民地支配から分斷國家へ—朝鮮總督府の「八・一五」政策を中心

대처한 결과이기도 하겠으나, 그나마 있었던 전시 유대감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더 이상 관심을 쏟아야 할 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은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진 것이지 아시아 국가들에게 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했다. 일본인들은 식민지 상실에서 오는 당혹감이나 책임의식을 갖지 못했다. 그 결과 조선에 대해서는 무관심뿐 아니라 의식적으로 조선으로부터 눈을 돌리려는 경향까지 보였다. 정대균(鄭大均)은 이러한 상황을 피관심(避關心)의 태도라 부른다.¹¹⁾

남홍각(楠弘閣)은 1939년과 1949년에 일본인 대학생들을 상대로 제 민족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조사에 따르면 1939년에는 비교적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된 조선인(전체 15개 집단 중 5위)의 지위가 1949년에는 가장 호감도가 낮은 집단(15개 집단 중 15위)으로 집계되었다. 1939년에는 전시 강제동원 체제 하에서 ‘내선일체’, ‘내선융화’와 같은 슬로건이 나돌면서 학생들의 관심사가 높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9년의 최하위 호감도는 놀라울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동경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민족에 대한 태도조사에는 인종거리지수에 있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룹은 아메리카, 프랑스 등이었던 반면 가장 거리가 먼 그룹으로는 호주인, 러시아인, 니그로인 그리고 조선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일본사회에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조선반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대로 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후 비참한 일본의 경제 상황 속에서 암시장과 관련된 활동이나 민족학교 폐지를 둘러싼 공권력과의 충돌 등으로

に」(特集 日本の敗戦とアジア), 『戦争責任研究』34号,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2001, 20~28쪽.

11) 鄭大均, 『韓國のイメージ: 戦後日本人の隣國觀』中公新書, 2010, 13~14쪽. 아끼쓰키 노조미(秋月望)는 ‘망각원망(忘却願望)’이라 부른다. 秋月望, 「朝鮮植民地支配を戦後日本Iはどう見てきたか」, 『プライム』31, 明治學院大學國際平和研究所, 2010.

인한 재일조선인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그다지 관련이 없는 몽골인들에 대한 호감도도 급강하한 것에 비추어 보면 “무관심과 함께 그동안 수면하에 있던 경멸과 편견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일 가능성이 높다.¹²⁾ 이상의 논의로부터 패전 초기 일본인들은 한반도의 조선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으며, 재일조선인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¹³⁾

그러나 1948년 이후 냉전체제가 시작되면서 미국이 대일 전후처리에 있어서 소위 ‘역코스 (reverse course)’를 걷기 시작하자 일본사회는 또 한 번의 격변을 겪게 되었다. 공직추방자들이 속속 복귀하기 시작했고 재벌들은 다시 살아나는 반면 노동조합들은 활동에 제약과 억압을 받기 시작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또 다시 전쟁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는 하였으나 일본은 경제재건의 기회를 맞았으며, 연합국들과의 강화조약 체결에 온통 관심을 쏟을 뿐이었다.

일본 민중들이 한반도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동안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은 조선의 광복을 미국과의 전후복구와 전후처리라는 두 개의 주요 정책 목표의 수행의 테두리 내에서 인식하였다. 연합국들에 대한 배상금의 최소화 속에서 조선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였으며, 조선에 남겨 둔 자본과 사유재산의 회수를 통해 경제개발에 활용하거나 조선문제 처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따른 영토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 중에 조선이 있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은 요미우리과 아사히 신문에서는 1면 톱기사로 다루어졌으나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12) 秋月望, 2010, 74쪽.

13) 정용욱, 「일본인의 ‘전후’와 재일조선인관: 미군 점령당국에 보낸 편지들에 나타난 일본 사회의 여론」, 『일본비평』 3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264~301쪽.

그렇지 않았으며, 9월 북한의 건국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수상이 되었다고 작게 보도되었을 뿐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에게 있어서도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가해의식은 없었다.

3. 전후처리 1: 광복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우리의 광복에 대한 위와 같은 일본인들의 인식상의 한계 속에서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전후처리가 진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체결과정과 조약 내용에서 일본이 우리의 광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가. 전후처리를 위한 일본의 준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최대 특징 중 하나는 애초에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의도한 징벌적 전후처리 계획과는 너무나 다른 관대한 전후처리로 막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 강화조약의 체결 업무를 담당하던 덜레스 국무성 특별고문의 개인적 신념과 노력의 결과라는 설명,¹⁴⁾ 2) 유리한 조건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치밀하고도 끈질긴 노력의 결과,¹⁵⁾ 3) 일본을 동아시아 반공의 보루로 삼도록 강요한 냉전의 국제환경¹⁶⁾ 등 다양한 설명이 있다. 이 중에서 일본의 노력이 강화조약에 영향을

14) 정성화, 「샌프란시스코 平和條約과 韓國·美國·日本의 外交政策의 考察」, 『인문과학연구논총』 7, 1990. 2, 143~157쪽.

15) 남기정, 「샌프란시스코 平和條約과 韓日關係 : ‘관대한 平和’와 냉전의 상관성」, 『동북아역사논총』 22, 2008. 12, 37~71쪽.

16) 박진희, 「戰後 韓日關係와 샌프란시스코 平和條約」, 『한국사연구』 131, 2005. 12, 3~34쪽. 金民樹, 「對日講話條約と韓國參加問題」, 『國際政治』 131号, 日本國際政治學會, 2002. 10. 133~147쪽.

미쳤다면 대한민국 문제의 처리를 어떠한 입장에서 처리하고자 했으며 미국과 협상을 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광복에 대한 일본의 시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945년 10월 22일 이미 일본외무성 조약국은 강화체결의 방식과 시기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있었다. 그 체결방식에 있어서는 연합국 개별국가와의 강화조약 체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면서도 당시의 국제정세로 보아 소련이나 중국과는 별도의 조약체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일본이 조약안 작성에 참가할 기회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의견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약안 작성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항복 선언 이전의 연합국 측 선언들에서 상당부분 언급된 만큼 일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정도의 긴급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일본 측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이전 조차지 안에 남아있는 구 일본 제국 재산의 귀속 문제는 강화조약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외무성은 서명참가국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¹⁷⁾

1945년 11월 13일, 폴리(Pauley) 배상조사단이 일본에 도착, 활동을 시작하였고 1946년 4월에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폴리보고서의 핵심내용은 일본의 공업에는 군사시설이 압도적인 만큼 이러한 과잉설비를 침략 받은 나라들에 넘겨주는 것이 무장해제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일본의 전후배상은 일본의 생활수준을 침략 받은 나라들보다 높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⁸⁾ 이 같은 배상 계획이 실현되면 일본의 공업생산력은 1920년대

17) 남기정, 2008, 47~48쪽.

18) Edwin W. Pauley, "Report on Japanese Reparations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November 1945 to April 1946", Dept. of State, Publication 3174 Far Eastern Series 25. Division of Publications, Office of Public Affairs, 1946.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었다. 이 보고서에서 또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한국관련 내용이다. 한국은 우호국으로 취급되어야 하나 배상 받아야 할 대상으로 고려될 필요는 없는데, 그 이유는 대일전 승리에 기여한 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⁹⁾

1945년 11월이 되자 외무성내에 ‘평화조약문제연구 간사회’를 구성하여 실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하였다. 폴리보고서가 나온 다음 달인 1946년 5월에는 1차 보고서를 내고 폴리 사절단의 조치가 강화조약 체결 이전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외국 공관은 몰수될 것이나, 개인재산에 관해서는 관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46년 12월 종전연락중앙사무국의 총무부장 아사카이 고이치로(朝海浩一朗)가 대일이사회 미국대표 애치슨을 만나, 폴리 사절단의 방침은 전체적으로 너무 가혹하며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애치슨은 미국은 기본방침은 일본의 전쟁능력의 박탈에 있는 만큼 일정한 경제생활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 측의 문제 제기에 이해를 표명하였다. 아사카이는 이어서 영국 측 대표 맥마흔 볼을 만나 배상협상에 대한 영국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맥마흔 볼은 일본의 경제적 곤경은 지역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징벌적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임을 표명하였다. 이 사례는 1947년 초까지 ‘관대한’ 강화조약을 위한 일본의 사전 조율작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미국과 영국의 인사들 사이에는 이미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²⁰⁾

당시 일본은 예상되는 전후처리와 배상문제에 대해 치밀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외무성의 담당자들과 정치가들은 미군 수뇌부와 민간

19) 이원덕,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20쪽.

20) 남기정, 2008. 49~51쪽.

지도자들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요시다 수상은 1957년 그의 회고록에서 일대일 설득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외무성은 1946년 가을부터 영문 자료를 작성하여, 영토의 45%를 상실했으며, 인구는 증가하고, 공업시설의 태반 파괴되는 등 일본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이와 동시에 일본이 민주주의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만큼 관대한 전후처리를 호소하였다.²¹⁾ 일본이 그 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영토문제였다. 미국이 7권에 달하는 영토관련 자료집의 접수를 거부하자 일본은 GHQ의 외교국장이었던 시볼드의 도움을 받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외교국에 제출하였고, 이는 이후 미 국무성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47년부터 시작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역코스 정책’에 따라, 중단되었던 강화조약 준비가 다시 재개되자 일본 외무성은 1949년 12월 3일 ‘할양지의 경제, 재정적 사항의 처리에 관한 기술’이라는 문건을 준비하였다. 할양지란 조선, 대만, 가라후토(사할린), 관동주 등을 일컫는 것으로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지역이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 착취설은 사실 무근이며 오히려 일본은 자본을 투자하여 이들 지역의 근대화 공헌하였다, 2)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들이 사유재산마저 박탈된 것과 같이 이들 지역에서의 가혹한 조치는 ‘국제관계상 이례적인 일’로 시정되어야 한다, 3) 이들 지역은 모두가 당시로서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보통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취득되어, 세계 각국이 일본령으로 승인한 바 있다. 여기서 일본은 적산과 사유재산의 몰수를 청구권 문제와 연계시키는 방식을 제시하면서 방대한 청구권 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항할 것을 주장하였다.²²⁾

21) 박진희, 2005, 17쪽.

22) 남기정, 2008, 53쪽.

나. 연합국 일원으로서의 서명국 참가 여부

강화조약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49년 11월, 미 국무성은 1947년 1월 최초로 작성한 초안 이후 다시 작성한 초안을 각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 송부하여 검토의견을 요청하였다. 미국은 1947년 초안 작성 때부터 한국의 서명국 참가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초(Mucchio) 대사의 권고에 따라 한국이 참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다. 무초대사는 한국이 유엔의 지지를 받아 정부수립을 이루었으며, 소련이 지지하는 북한과 달리 유엔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위신과 대한국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서명국 참가는 필요하다고 설득하였다. 원래 이승만 정부는 한국의 서명국 참가는 당연한 것으로 믿어 왔다. 우선 한국은 카이로 선언이 표현한 노예상태에서 식민지 통치 전 기간을 통해 독립운동을 해 왔으며, 둘째, 중국 각지에서 중국군과 함께 일본에 대항해 싸웠고, 셋째, 1941년 12월에는 대일선전포고를 내린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든 것이다.²³⁾

1949년 12월, 미 국무성은 ‘대일강화조약에 있어서의 한국의 참가’ 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 문서는 한국의 서명국 참가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이 승인한 적 없는 임시정부가 대일 선전포고를 근거로 연합국의 일원임을 주장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식민지 통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배상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함과 동시에 서명국으로서의 참가 허용이 한국의 과도한 배상요구를 자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²⁴⁾ 미국은 1943년 전시에 열린 영토소위원회 보고서에서

23) 金民樹, 「對日講話條約と韓國參加問題」, 『國際問題』日本國際政治學會 131号 2002, 133~147쪽.

24) 金民樹, 2002, 134쪽.

중국 측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 촉구를 두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즉,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것은 한국의 항일운동에 있어서 특정세력 편들기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한국 독립 후 중국의 입장만 강화 하는 결과를 낳아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은 한반도의 중국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²⁵⁾ 광복 직후 임시정부 세력들이 개인자격으로 입국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미국의 이러한 인식 때문이었다.

1950년 4월 텔레스가 강화조약 담당 특별 고문으로 임명되면서 강화조약 협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텔레스는 1950년 6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한국이 강화조약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예비회담 구성국으로 명시한 바 있다. 그것은 텔레스가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초 대사의 의견과 같이 냉전에 대응하는데 있어서의 한국의 위신,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1차대전의 전후처리 협상이 파리 강화회의에 참가했던 경험으로부터 징벌적 전후처리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텔레스의 등장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궤대한 전후처리로 방향을 틀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별도의 강화조약안을 작성하고 있던 영국은 한국의 서명국 참가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초안 작성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국은 한국이 일본의 영토였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그때까지도 완전한 국가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심지어 영국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서 연합국에 대항하여 전쟁을 수행한 것으로까지 인식하고 있었다. 나아가 일본의 한반도 통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과거 수많은 식민지 경영의 경험이 있는 영국이

25) 장박진, 「미국의 전후처리와 한반도 독립 문제: ‘근거 없는 독립’과 전후 한일관계의 기원」, 『아세아연구』 153호, 2013. 9, 23~64쪽.

미국과는 입장이 다름을 보여주는 점이다. 또한 영국은 베트남, 필리핀 등 승전국의 구식민지는 연합국의 지위로 평화회의에 참가하는 것에 찬성하였으나, 패전국의 구식민지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하고 있었다.

영국이 한국의 참가를 반대한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 국제정세와 관련이 있다. 미국은 한국전에 참전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이었던 대신 대만의 중화민국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있었다. 반면, 영국은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외교적으로 승인한 상태였다. 미국이 소련과 중국을 배제한 단독강화를 구상하는 이상 한국의 참가는 중국을 자극할 뿐 아니라, 중국과 소련의 정치적 공격의 소재가 될 수 있으므로 한국의 참가를 배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1951년 3월에 열린 델레스-요시다 회담에서 일본은 ‘한국정부의 강화조약 서명에 관하여’라는 문서를 전달하였다. 거기서 일본은 공산주의자가 대부분인 재일한국인들이 연합국 지위를 획득할 경우 그들의 권리 요구가 일본사회에 큰 짐이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한국의 서명국 참가를 반대하였다. 델레스의 계속된 설득에 일본은 재일한국인이 연합국인의 지위를 획득하지 않는다면 서명국 참가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음을 표하였다. 왜 요시다 수상은 미국의 요구에 동의를 해 주었을까? 델레스와 요시다가 회담을 한 바로 그날 일본은 서명국으로 참가하는 필리핀과 더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서 한국의 서명국 참가로 인해 일본의 배상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한 요시다는 강화조약 협상에 있어서 최대의 후원국이 될 미국과의 대립은 가능한 한 피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²⁶⁾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재일한국인들이 연합국인의 지위를 얻지

26) 정성화, 1990. 147~150쪽.

못하면 서명국 참가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이 타결은 한국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단순한 서명국의 지위는 오히려 불리한 조약 내용들에게 구속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²⁷⁾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일본의 대한국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일본은 한국이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았다. “한반도 내부 및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었던 독립운동 세력과 일본 사이의 교전을 전쟁이 아닌 ‘반란’의 수준으로”²⁸⁾ 보고 있었던 것이다.

3월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서명국 참가와 관련하여 일본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5월 이후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미영양국이 최종 조정회의를 거치면서 중국, 대만 모두를 강화회의에 초대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한국도 참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국에 대해서는 서명국 참가 대신 조약상에서 전후재산처리나 어업협정, 일반통상협정 등에 있어서 일정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 짓기로 하였다. 그 결과가 6월 14일 처음으로 한국의 참가가 배제된 초안으로 나왔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명국 리스트에서 배제되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고, 델레스는 한국과 함께 국제적십자사를 참관인으로서 초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9월 8일 강화조약회의에 한국정부는 참가하지 않았다.²⁹⁾

다. 전후배상 문제

모든 강화조약이 그렇듯이 이전의 전쟁 관계를 끝내는 과정에서

27) 남기정, 2008. 442쪽.

28) 박태균, 「한일회담 시기 청구권 문제의 기원과 미국의 역할」, 『한국사연구』 131, 2005, 40쪽.

29) 정성화, 1990, 11쪽.

가장 중요한 것이 청구권 문제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대한국 인식과 한국의 서명국 참가의 문제는 청구권 문제와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강화조약을 통해 철저한 책임규명과 배상을 통한 과거사 청산을 이루겠다는 것이었으며, 이승만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일을 기조로 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타협을 하기도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침략근성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여겼으며, 일본의 이러한 근성은 군사적인 형태가 아닌 정치적, 경제적 형태로도 얼마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다.³⁰⁾

1945년 8월 15일 오전, 천황의 항복 선언에 이어 미국은 일반명령 1호를 발표하였다. 지역을 구분하여 미국과 소련, 중국이 패전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담당할 것을 명한 것이다. 여기에는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일본과 무력투쟁을 벌여온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중국 동북지역의 좌익세력과 국내의 한국건국동맹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연합국의 대일본전에서의 주도 세력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미 육군 총사령부는 1945년 9월 7일 포고 1호를 공표하였다. 이 명령은 미군이 진주하기도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한반도의 북위 38도 이남에 대한 미군의 점령을 위한 준비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청구권과 관련된 첫 번째 명령이었다. 그 4조에서 주민의 소유권은 존중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 육군이 진주하고 미군정이 수립된 이후인 1945년 9월 25일에는 법령 2호가 발표되었는데, 한국 내의 일본인들의 재산에 대해 8월 9일 이후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사흘 뒤인 1945년 9월 28일에는 군정법령 4호가 발표되었다. 이는 일본 육해군의 각종 재산에 대한 매매와 취득, 양도를 금지하고 한국 내에 소재하는 재산은 모두

30) 박진희, 2005, 5쪽.

미국의 소유가 됨을 선언한 것이었다. 그리고 10월 23일에는 그 실행 절차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총독부 재산은 미군정청 재산으로 귀속되지만 일본인 개인의 사유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됨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24일 발표된 아놀드 군정장관의 지시사항들을 보면 불명확하고 모순되는 항목들이 들어 있었다. 군정청은 10월 30일까지 보충적인 ‘일본인 재산 처리 방침’을 발표하면서 일본인 재산의 매매에 대한 허가 방침을 공식화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군정청 법령에는 일본의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몰수방침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었으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점이 많이 남아 있었다. 이에 대해 박태균은 의미가 불명확한 상태로 발표된 명령문구들은 미군정청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³¹⁾ 미국은 미군정을 유지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으므로 일본인들의 사유재산도 몰수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헤이그 육전조약은 비록 적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국제법 규정에 의하면 사유재산의 몰수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미군정청은 1945년 12월 법령 33호를 발표함으로써 일본 소유의 모든 재산의 처분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렸다. 일본의 국공유 재산과 사유재산은 모두 군정청이 몰수한다는 것이었다. 그 2조에는 “기타 전 종류의 재산 및 그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부로 한국군정청이 취득하고 한국군정청이 모든 재산 전부를 소유함”이라고 되어 있다. 미국이 육전조약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사유재산을 몰수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1945년 10월 SWNCC176/88에 나타난 미국의 대한정책에 기인한다.³²⁾ 이

31) 박태균, 2005, 44쪽.

32) “Basic Initial Directive to the Commander in Chief, U.S. Army Forces, Pacific, for the Administration of Civil Affairs in those Areas of Korea Occupied by U.S. Forces.” October, 1945. FRUS 1945, Vol. VI, 1074쪽.

문서에 나타난 미국의 대한정책의 목표는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분리하는 것이었다. 2항에서는 한국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킨 후 한국을 일본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다. 3항에서는 나아가 한국이 건전한 경제발전 통해 자주독립국가로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박태균은 이에 대해 일본이 중심이 되었던 동아시아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한다.³³⁾ 점령초기의 미국의 대일본 정책이 징벌적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는 점은 1945년 말에 구성되어 조사를 시작한 폴리 조사단의 보고서의 제안에서도 볼 수 있다. 폴리 보고서는 또한 한반도에 남아있는 일본의 재산은 한국 재산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이 재산은 한국이 독립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정법령 33호는 그 이후로도 한국내에 남은 일본의 재산에 대한 기본 방침으로 여겨졌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인 1948년 11월에는 미군정이 소유해 온 일본정부 및 일본인들의 재산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의 협정’에 의해 미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었다.

날 짜	미국 법령	주요 내용
1945. 8. 18	일반명령1호	
1945. 9. 7	미 육군총사령부 군정법령1호	일본인 주민소유권 존중
1945. 9. 25	미 육군 군정법령2호	8월 9일 이후의 일본재산 처분 금지
1945. 9. 28	미 육군 군정법령4호	일본의 육해군 소유재산 몰수
1945. 10. 23	양도절차 관련 발표	사유재산은 법적 보호, 매매함
1945. 10	SWNCC176/8	미국의 대한국기본정책 목표 발표
1945. 12. 6	미 육군 군정법령33호	모두 몰수

33) 박태균, 2005, 46쪽.

1947년부터 냉전의 분위기가 국제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1947년 일본에 파견된 대일평가위원회의 스트라이크 보고서와 1948년의 존스톤 보고서 이후 미국의 대일 배상정책이 변화하게 되었다. 냉전의 심화가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³⁴⁾ 그 당시 이미 징벌적 전후처리의 계획은 어느새 ‘관대한’ 전후처리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거기다 1950년 초반 강화조약의 협상을 맡기 시작한 덜레스는 중무장하고 불만스러운 동맹국 일본보다는 경제적으로 번창하고 친미적인 일본이 미국에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1951년 1월 일본을 방문한 덜레스가 미국의 대일강화원칙 전달했을 때, 그는 이 조약을 우방간의 조약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전달했다. 미국내 국방성과 국무성 사이의 의견 대립이 강화조약과 안보조약의 동시체결이라는 구상으로 타협점을 찾은 만큼, 이미 덜레스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안보조약 체결에 대한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예상을 뛰어넘는 관대한 조약구상에 놀라면서 미국에 최대한 양보함으로써 자국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였다.³⁵⁾

그러나 강화조약 초안이 마무리 되어 가던 1951년 3월 6일 문제가 발생하였다. 일본이 한국 내에서 미군정이 몰수한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바로 헤이그 육전조약의 적지사유재산불가침 원칙에 근거한 것이었다. 미국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미국정부는 미군정이 제정한 법령을 스스로 부인하거나 번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해결책은 바로 작성 중에 있던 초안을 수정하는 것이었다. 즉, 미 육군 법령 33호를 인정하고 일본의

34) 이에 대해 남기정(2008)은 그 변화를 냉전보다는 일본의 로비와 협상준비,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우리 측의 상대적 준비 부족으로 그 원인을 돌린다. 1947년 초까지 이미 일본의 사전 조율작업이 결과, 미국 영국 인사들 사이에는 관대한 전후처리에 동조하는 분위기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35) 박진희, 2005, 17쪽.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 4조 b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도사리고 있었다. 만약 한국이 대일배상 요구를 해 올 경우 거절할 명분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4조 a항을 수정하여 어느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듦과 동시에 양국의 ‘특별한 협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였다.

평화협정 체결이 이미 끝난 1951년 12월, 4조의 해석을 놓고 일본은 GHQ에, 한국은 미국무성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GHQ는 국무성에 견해 표명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 그 이후 미국은 여전히 애매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양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기대하였다. 즉, 조약발효 다음날인 1952년 4월 29일 미국은 문서를 통해 4조 b항과 관련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귀속재산은 군정청이 한국에 이양한 것은 정당하나 청구권 문제는 한일간 협의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³⁶⁾

10년을 끌어 온 한일회담은 케네디 행정부에 들어오면서 한일 양국의 관계정상화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현실적 요구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실익을, 일본은 명분을 갖는 해결책을 찾았다. 미국은 3억5천~4억5천 달러에 달하는 협상금액을 생각하고 있었다.³⁷⁾

4. 전후처리 2: 한일협정

가. 한일회담을 위한 미국의 중재노력

우리나라는 강화조약을 통해 주권과 영토 및 청구권에 관한 요구

36) 박태균, 2005, 47~54쪽.

37) 박태균, 2005, 54쪽.

들을 관찰하려 하였으나 서명국으로서의 참가에 실패하자 일본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그러나 전후 한일의 양국 직접접촉은 양국 주재 미국외교관들의 중재로 이루어졌다. 미국은 영국의 한국에 대한 서명국 참가 반대 입장을 수용하기로 하는 순간부터 한일 직접 협상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14일 한국의 참가 배제가 결정된 최초의 미영 합의안이 작성되었다. 그 초안이 공개되기 전에 무초대사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꾸짖해 주었다. 이에 이승만은 한국이 배제된 강화조약이 미국에서 비준될 경우 한국과의 협상에서 일본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고, 그러므로 비준 이전에 일본과의 협상이 그나마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한일회담의 가능성을 미국 측에 문의하였다.³⁸⁾

7월 3일 그 초안이 공개되자 일본은 재일교포들의 송환 작업을 위해 한국과의 직접대화 통로를 모색하고자 시볼드를 통해 유엔군 사령부 외교처에 한국과의 협의 가능성을 의뢰하였다. 패전 후 재일교포 문제는 일본의 대표적인 골칫거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어로수역 협상이나 청구권 문제는 논의할 의사가 없었던 만큼 의제를 재일교포 국적문제에 국한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하였다. 미국은 양쪽으로부터 서로 상이한 의뢰는 받았으나, 일본이 강력하게 한국 측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일본 측 요구를 반영한 한일회담을 개최할 것을 결정하고 8월 15일 이를 양국 정부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20일 동경에서 최초의 한일회담이 개최되었다.³⁹⁾ 이를 예비회담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듬해인 1952년 2월 15일 시작된 회의를 1차 회담이라 부르며 '65년 6월 22일에 한일협정이 체결되기까지 14년 동안 6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많은

38) 정성화, 1990. 153~154쪽.

39) 정성화, 1990. 155~156쪽.

의제들이 다루어졌으나 여기에서는 식민지 지배 인식의 문제와 청구권 문제의 해결방식으로 나누어 살펴 볼 것이다. 다음에서 우리는 이 두 문제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한일회담: 식민지 지배 인식

1차 회담부터 조약의 성격을 둘러싸고 양국은 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 문제는 청구권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로 오늘날 한일관계의 현안 대부분이 이와 관련이 있다. 1차 회담에서 일본은 “일한우호조약초안”이라는 이름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여기서는 조약체결의 목적을 “강화조약이 규정에 따라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양국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전을 존중하며 양국의 우호와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것”⁴⁰⁾이라고 적고 있다.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나 반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반면 우리 측은 “한일 간의 기본조약안”이라는 제목의 조약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양국관계의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었다.⁴¹⁾ 일본의 ‘우호조약’안이 향후 양국이 외교관계를 설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우리 측의 ‘기본조약’은 양국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양국관계에 대한 인식의 정립과 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은 통상과 항해에 대한 조약에 가까운 조약안을 제시한 데 반해, 우리 측은 강화조약에 가까운 제안들을 제시하게 되었다.

조약의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애초의 제목을 ‘한일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조약’

40) 외무부 정무국, 『한일회담약기』 219~227쪽

41) 외무부 정무국, 『한일회담약기』 242~244쪽.

으로 변경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인식의 차이는 우리 측 안의 제3조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된다. 1차 회담 당시 우리 측 제안의 3조는 다음과 같았다.

제3조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10년 8월 20일 이전에 구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⁴²⁾

이는 우리 측이 위의 ‘기본조약’이라는 제목을 설정한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는 조항이다. 즉, 한일합방조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었다. 일본 측은 이러한 우리 측 주장을 수용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수정안의 전문에 새로운 문장을 삽입하였다. 즉 ‘일본국과 구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일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에 있어서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측이 의도하는 합방조약의 무효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은 담겨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되었다. 1차 한일회담의 결렬은 일본 측의 역청구권 주장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바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 문제는 사실상 1961년 박정희 정부하에서 조속한 협상 타결을 추구할 때까지 회담 결렬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인식 문제의 심각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보타 발언’이다. 1953년 10월 6일, 3차 회담이 개최되자마자 본격적 논의도 진행되기 전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한일회담은 이후 4년 6개월 동안 열리지 못하였을 정도로 그 파장이 컸다. 당시 한국 측의 흥진기 대표는 한국이 일본의 역청구권에 대한 대응으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나 그것을 포기하고

42) 외무부 정무국, 『한일회담약기』 250쪽.

순순한 법률적 청구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1949년 9월 우리 정부는 대일배상요구조서에서 (1) 문화재, 선박 등 현물반환, (2) 확정채권, (3)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에 기인하는 인적, 물적 피해, (4) 일본 정부의 저가수탈 등 4개 항목에 걸친 요구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2년 2월 20일의 2차 회담 때 제시한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소위 대일청구 8항목)’에서는 강제공출이나 전시의 물적 피해 등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피해를 나머지 분야에 대한 청구권만을 요구하고 있었다.⁴³⁾

홍진기 대표와 일본 측 수석대표인 구보타 사이에는 여러 차례에 걸친 공방이 오고 갔으며 우리 측 대표단은 며칠 뒤에 열린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5가지 항목에 걸쳐 구보타 대표의 해명과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⁴⁴⁾

- 1) 36년간의 일본의 한국강제 점령은 한민족에게 유리했다.
- 2) 한국민족의 노예화에 관하여 언급한 카이로 선언은 연합국이 전시 히스테리의 표현이다
- 3) 일본의 구 재한 일본인 재산을 미군점령 제33호에 의해 처리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 4) 대일강화조약 체결 전에 한국이 독립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 5) 연합국이 일본 국민을 한국에서 송환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구보타는 4)와 5)에 대해서는 해명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1)~3)에 대해서는 조금도 물러서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위의 세 가지 주장의 문제점은 바로 미국이 취한 정책에 기초한 한국의 청구권 요구는 불법이지만 미국의 정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43) 요시자와 후미토시,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의 ‘식민지책임’론 - 기본관계 및 청구권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III.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4. 일제식민지책임 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재조명. 179~200쪽.

44) 이원덕, 「한일회담에서 나타난 일본의 식민지지배 인식」, 『韓國史研究』 제131호, 2005. 12, 110~111쪽.

입장을 취하였다는 점이다. 1)과 2)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줌과 동시에 카이로 선언이 한국에 대해 규정한 것은 불법적이지만 미군정이나 카이로선언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3)의 재한 일본인 재산에 대한 처분은 불법이었으나 그렇다고 미국을 비판하지는 않는다. 당시의 외상이었던 오카자키도 구보타 발언은 ‘당연한 것을 말했을 뿐’이라는 지지 발언을 내놓았다.⁴⁵⁾

이렇게 중단된 한일회담은 4년 6개월 뒤 4차 회담에서 일본 측이 발언철회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재개되지 시작하여, 1960년의 5차 회의부터는 청구권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을 시작되었다. 그리고 6차 회의에서는 김-오히라 메모를 통해 청구권에 대한 타결이 있었으며, 한일회담의 최종마무리를 위한 7차 회담에서는 또다시 식민지 지배 인식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 측은 한일합방 조약과 그 이전의 조약 모두가 원천적으로 무효(null and void)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는 합법적이었으며 패전으로 인해 무효가 되었다(have become null and void)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 결과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외상 사이의 타협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바로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는 표현을 통해 쌍방이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이 방법을 통해 조약체결에는 성공하였으며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인식의 차이를 방치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놓게 되었다.⁴⁶⁾

45) 이원덕, 2005, 99~131쪽.

46) 高崎宗司 檢証日韓會談 岩波新書 1996. 文京洙 “戰後日韓關係と市民社會の課題” 藤田和子ほか編 新自由主義に揺れるグローバル・サウス ミネルヴァ書房 2012.

다. 한일회담: 청구권 문제

4차 회담에서는 일본 측이 구보타 발언을 철회함으로써 청구권에 대한 예비회담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구보타 발언의 철회는 그 때까지 일본 측이 주장해 온 역청구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우리 측의 청구권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일본은 재한 일본인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최대한 우리 측 요구와 상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957년 12월 31일, 4차 회담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일공동선언을 통해 일본 측은 역청구권을 철회하였다.

1960년 장면 정권하에서 재개된 5차 회담에서는 우리 측이 요구한 일반청구권 8개 항목과 선박, 문화재 반환에 대한 토의가 32회에 걸친 위원회 개최를 통해 진행되었으나 실질적인 결과를 낳지는 못했다. 구보타 발언을 철회했다고 해서 인식 자체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청구권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이다. 5차 회담은 양자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청구권의 세부 금액 책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해 주는 회의였다.⁴⁷⁾

1961년 정권을 잡은 박정희 장군은 경제발전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설정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치적 타결을 시도하게 된다. 1961년 6월의 케네디-이케다 회담, 그리고 11월의 박정희-이케다 회담을 거치면서 한·미·일 3국은 한일협정의 조속한 타결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 한국의 제3공화국이 경제개발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파악한 이케다 수상은 그 때까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배상방식과 같이 한국에 대해서도 경제협력 방식을 따를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지원 자금으로 일본의 공산품과 기술을 수입

47) 이원덕, 2005, 116쪽.

하도록 함으로써 일본 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었다. 그리하여 1962년 11월의 김종필-오히라 회담에 이르는 양국의 협상은 청구권의 내용에 대한 논의를 떠나 청구권 자금의 총액 설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 결과 양국이 자금의 규모에 합의를 했을 때에도 그 자금의 명목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1962년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그 금액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은 7억달러, 일본은 7천만 달러였다. 이는 얼마나 양국이 청구권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두 차례에 걸친 김-오히라 회담의 결과,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는 금액의 규모는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이상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김-오히라 메모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메모에는 자금제공의 명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해 한국은 그 금액을 ‘청구권 자금’ 또는 ‘사실상의 배상’으로 설명하였으나, 일본 측은 ‘경제협력자금’ 혹은 ‘독립축하금’으로 해석하였다.⁴⁸⁾ 또한 1965년 최종 협정 2조에는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계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라고 적고 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의식을 결여한 채 체결된 청구권 협정은 앞으로 계속될 양 정부 간 공방의 미래를 남겨놓고 있었다.

라. 해결되지 않은 청구권 문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청구권 문제는 이후에도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의 문제, 국적에 따른 상이군인과 군속의 보상 문제, 식민지

48) 최종 청구권협정의 전문에는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라고 적고 있다.

출신자의 군인 복지 혜택의 문제,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 등 국가 간, 국민 간에 많은 쟁점들을 만들어 내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인식없이 이루어진 청구권 문제 해결은 향후 다음과 같은 일본의 무리한 행태를 낳게 된다. 첫째는 식민지 시기 법률을 전후 그대로 적용한다거나, 둘째, 배상과 보상으로부터 식민지 피해자들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거나, 셋째,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그것이다.

중일전쟁 다음해인 1938년에는 ‘국가총동원법을 한국, 대만 및 가라후토에 시행하는 건’을 발표하였다. 모집 형태로 집단연행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총독부는 1942년 ‘선인 내지이입 알선요강’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동원에 박차를 가하였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44년에는 노동력 부족으로 ‘사람사냥’이라 불릴 정도로 강제적인 모집방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1943년 8월부터는 조선에서 징병제가 실시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11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군에 편입되었으며, 군속으로 12만 명이 동원되었다.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 출신들은 ‘천황의 군대’에 입대해 일본군으로 활동해야 했다. 국가총동원령 이후 연행된 조선인 72만 4천여 명인 것으로 추정되며 전쟁이 끝났을 때는 200만 넘는 조선인이 일본에 남게 되었다.

이들 중 일본군으로 복무한 조선인과 대만인들은 강화조약이 발효됨과 동시에 일본국적에서 이탈되었고, 그 때부터 ‘군인은급법’이나 ‘원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1923년 4월 운영되어 온 군인은급법은 국적을 잃으면 수급자격을 잃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군력 12년이면 일본국적의 조선인도 대만인도 은급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패전 후 GHQ는 군인은급의 지급중지를 명령함으로써 군인은급이 폐지되어 버렸다. 1951년 4월 28일 강화조약이 발효되자 일본정부는 주권회복과 동시에 옛 군관계자

원호에 착수하여 조약발효 2일 후인 4월 30일 ‘원호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단, 이 법률은 4월 1일로 소급적용되며 호적법 적용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법무부 민사국장은 식민지 출신자들에게 일본국적의 상실을 통고하였는데 그 기준일을 강화조약이 발효된 4월 28일로 하였다. 이 경우 조선이나 대만 출신의 군인들도 일본국적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원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호법은 1947년 발효된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있었다. 호적법에 따르면 일본 식민통치하에서 일본인은 ‘내지호적’과 ‘조선호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7년 호적법은 내지호적만을 인정하였고, 조선호적은 참정권으로부터 배제되었다. 1953년 일본은 군인등급을 부활시키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그 적용대상도 원호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일본은 출발부터 전쟁에 동원한 식민지 출신자들을 배제하는 원호체제를 만든 것이었다.

식민지 지배하에서 징집되어 전장으로 동원되었다가 원호법에서 배제되었던 대만인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992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피해는 ‘전쟁으로 인한 손해는 국민이 같이 인내해야만 했던 시기’의 것으로 별도의 입법이 없이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 식민지 지배하에서 가졌던 국적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옛 국민으로서 그 피해에 대한 인내는 일본인들과 함께 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리고 그 판결은 이후 많은 보상 소송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국가총동원령 하에서 징집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린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남아 있다. 전쟁이 끝난 1946년 10월 일본정부는 기업들에게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미지불금의 공탁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는 정확한 주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10년 지나자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에 귀속시켜 버렸다. 근거는 한일협정 2조3항에 기초하여 일본이 제정한 국내법(법률 144호: 1965.12.17 제정, 일본이 한국 및 한국국민에게 걸려있는 재단, 권리 및 이익에 대해 처리)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국내법에 의해 한국 국민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어 버렸다. 이에 대해 우츠미 아이코는 “기업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조선인의 미불금을 ‘몰수’하였다 고 비판받아도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⁴⁹⁾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모든 청구권에 대해 한일협정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다르다.⁵⁰⁾ 한일협정은 개인의 재산권은 소멸시키지 않았고 외교보호권만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⁵¹⁾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협정은 외교보호권의 상호포기에 해당하는 것이지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1992년 3월 27일에는 무토 마사토시 동아시아과 과장도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같은 답변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법원은 여전히 제국주의 시절의 일본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에게는 민사상의 손해에

49) 内海愛子, 『戦後補償から考える日本とアジア』, 山川出版社, 2002. 김경남 옮김. 『전후보상으로 생각하는 일본과 아시아』 논형, 2010, 92쪽.

50) 개인보상의 합법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창록,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 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서울민족문제연구소단행자료(국립도서관 소장).

51) 외교보호권이란 국제법에서 적용되는 원리로, 국민이 외국에 있을 때,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대우와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데 근거한다. 외교적 보호는 피해자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권리로서 국제협약에 기초하는 개념이다. 국가는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한 경우에도 발동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또한 발동에 있어서 피해자의 요청도 필요하지 않다. 배상이 지불되는 경우에도 국제법상 그것은 국가에 대한 것이고 피청구국에 대한 청구권이 피해자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 内海愛子, 김경남 옮김, 2010, 83쪽.

책임질 의무가 없다(‘정부무답책’)는 주장과 전쟁으로 인한 손해는 국민이 함께 인내해야 한다(‘전쟁손해수인론’)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⁵²⁾ 이는 결국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식민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여전히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었으며, ‘통절한 반성’은 할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⁵³⁾

5. 결론

2015년 7월 중 일본의 대표기업 중 하나인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포로로 강제노동에 동원된 미국인과 중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였다. 그리고 중국인 피해자들 3765명에 대해서는 사과와 함께 1인당 10만 위안(약 1870만원)의 기본 피해 보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대법원은 2012년 강제 노동을 시킨 일본 회사들에게 개인보상을 해 줄 것을 명령했다지만 일본 기업들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상고를 해 두고 있는 상태다. 미쓰비시는 우리나라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유는 우리나라 피해자들은 당시 외국인 신분 이 아니라 식민지배하에 있던 일본 국민들이었으며, 다른 일본인들과 같이 국가총동원령에 따라 징용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각종 보상을 받았지만, 우리 피해자들은 더 이상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일본이 우리의 광복 70년에 대한 시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52) 홍성필, 「일본의 전후책임인식과 이행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法學研究』 23권 1호, 2012. 6, 389~431쪽.

53) 남상구, 「일본의 ‘전후처리’와 식민지 문제」, 『한일관계사연구』 36집, 2010. 8, 291~315쪽.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대 초기부터 일본인들 사이에 유포 되어 온 한국인들에 대한 멸시와 차별적 시각이 식민지 지배기를 거치면서 확대재생산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광복과 일본의 패전을 넘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식민지 지배 자체에 대한 추궁과 반성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동경재판에서 피고석에는 미나미 지로와 고이소 구니아키, 이다가키 세이지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의 들은 조선에서 전쟁동원 체제를 확립한 인물들이며, 세 번째는 조선군사령관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증인석에는 조선총독부 정부총감을 지낸 두 사람도 앉아있었다. 그러나 기소된 삼인의 죄목은 침략전쟁의 공동모의 및 계획준비와 수행, 거기다 통례의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였다. 즉 A급, B급, C급 죄목 전부에 해당하는 범죄 명목으로 기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법정은 연합국의 식민지들과 중국에 대한 일본군의 침략에 대해서는 재판하였으나 조선과 대만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추궁되지 않은 식민지 지배 - 이것도 전후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크게 왜곡하였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청산 없이 전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구가해 온 것이다.”⁵⁴⁾ 한국민들에 대한 기존의 차별적 시각과 국제사회의 환경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견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과거사와 관련된 많은 사과가 이루어졌으나, 도의적, 윤리적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2015년 7월 중에는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 바로 인도 야당 정치인이 영국의 저명 토론단체에서 영국은 200년에 걸친 인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한 인도 국내의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모디 총리는 그가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54) 内海愛子. 김경남 옮김. 2010, 14쪽.

주장을 했다고 발언함으로써 영국의 식민지 보상을 요구했다. 유럽의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거 수년간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는 역사정의 레짐이 정착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사회가 이에 대해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또 다른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시각이다.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은 더 이상 70년 전 일본이 우리를 바라볼 때와는 같지 않다. 물론 절대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국력이 일본만 하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의 중견국 그룹에는 속하는 정도다. 중국의 경제도 규모에 있어서만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 이러한 세력의 변화가 일본을 더욱 도발적으로 만드는 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변국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독일이 주변국들과 화해를 했던 이유가 프랑스, 폴란드와의 협력과 협조가 꼭 필요했던 것과 같다.

“앞으로 역사문제는 유럽에서나 아시아에서나 국제관계의 핵심변수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일본이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조언은 바로 이 근본적인 현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과 세계의 경향이 일본으로 하여금 역사책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다... 그 성공여부는 화해에 대한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과 이웃들이 그 노력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⁵⁵⁾

[원고투고일: 2015.7.15, 심사수정일: 2015.8.21, 게재확정일: 2015.8.25.]

주제어 : 광복 70년, 일본인의 조선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일회담, 식민지 지배, 전후처리, 한일국교정상화, 청구권, 한일병합조약, 카이로선언

55) Thomas Berger. “*Different Beds, Same Nightmare: The Politics of History in Germany and Japan*, an American Institute of German Studies Issues Brief #39, Johns Hopkins University, 2009, 42쪽.

<ABSTRACT>

Korean Independence and 70 Years Thereaft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Post-War Settlement

Choi Woon-do

What did the Korean liberation of 1945 mean to Japan? Why is it important to Korea of today? Japanese perception of disparagement and degradation on Koreans, which began to be formed since early modern period had been expanded and reproduced throughout the colonial period. Koreans were discriminated as an inferior being but they were mobilized during the war on an equal basis as one of Emperor's soldiers and as one of Empire's subjects. Japanese has been perceiving Koreans based on double standards. When the war was over and Japan had to embrace its own defeat, Japanese society went through with apathy toward Koreans. When its own interest is at stake, as was in war reparations and the treatment of Koreans in Japan, they viewed Koreans only as the subject of its own colonial rule but neither as Japanese citizens nor as the citizens of Allied powers. This perception is reflected into the legal framework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Korea-Japan Treaty of 1965.

Excluded from the list of signature countries in San Francisco Peace Treaty, Korea had to face the negotiation table for property claims against Japan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Even though Korea's limited claims on war-time damages excluding the reparations on Japan's colonial rule was not considered in the peace treaty and had to be dealt in the separate bilateral negotiation. The illegality and invalidity of the Annexation Treaty of 1910 was not confirmed in the Korea-Japan Treaty and the issue was stitched up without final decision. The economic aid, which was the main topic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was interpreted as the fund for the claims against Japan

by Koreans and as the congratulatory donation for independence. Because of this ambivalence, Japan has kept avoiding its legal responsibility for individual reparations and compensation during the last 70 years. Korean liberation, as long as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s concerned, will be completed only when Japan changes its perception on Koreans and accepts the invalidity of the Annexation Treaty of 1910.

Key Words : Korean Liberation, Japanese perception on Joseon, San Francisco Peace Treaty, Korea-Japan Treaty, Colonial rule, War settlement, Normalization of Korea-Japan Relations, War reparation, Annexation Treaty, Cairo Declaration